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69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년 5월 23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2024. 11. 8. 개정되어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됨
- 이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III.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별첨).

3.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2025. 4. 24. ~ 5. 14.)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3] 결과통보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4] 제외통보확인서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5] 검토의견서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869호로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의 수 수료 면제 및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의 대상 유형을 각호로 신설해 대상 유형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만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¹⁾의 취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 9. 5., 2024. 11. 8.>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가 구직 과정에서 갖는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채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자 변화

	현행	변경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우선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8.>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2024. 11. 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22.]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대상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 규정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에서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 즉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으로서, 법상 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경계선에 위치하여 질병, 실직, 갑작스러운 가계 지출 증가 등 작은 위기에도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법 제34조(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²⁾에 따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³⁾ 제1호, 2호 및 제3호에서 장

2) 「헌법」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정의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증장애인도 기본적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⁴⁾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초저출산 문제 및 다자녀 가구의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녀 수에 따라 누적되는 양육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차 상위계층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 또한 2023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자녀의 양육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3명⇒2명)하는 등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정책 보도자료 (2021.9.15.)

- | |
|----------------------------|
|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주요 방향 > |
| ■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
| ■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
| ■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
| ■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5),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년 3월 31일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논의·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발표하였음

-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역시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내포한 사회적 책무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만 면제했던 응시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른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는 202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9월에 안내되고 있는바, 2026 학년도 시험도 9월에 안내된다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시험응시 대상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응시수수료 면제자를 기준으로 예측한 세입감소액은 연 78만원으로 면제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표-2] 최근 3년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5) 사회관계장관 회의_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안), (023.8)

구분	기초수급자	한부모대상자	합계
2023학년도	54명	5명	59명
2024학년도	40명	4명	44명
2025학년도	68명	5명	73명
평균(소수점 절상)	54명	5명	59명

※ 최근 3년간 기초수급 지원자 평균 **54명** * (2023년 전국 차상위계층 1,012,078명/ 2023년 전국 기초수급자 2,554,627명) = **22명**(소수점 절상)

[표-3] 최근 3년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구분	장애인 지원자
2023학년도	104명
2024학년도	131명
2025학년도	131명
평균(소수점 절상)	122명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수 추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진석(2180-8266)
----------	----------------	-------	----------------

관 계 법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25. 3. 1.] [교육부령 제278호, 2022. 9. 5., 일부개정]

제21조(응시수수료)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